

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



2023. 8.

서울특별시의회
운영위원회

1. 근 거
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47조의 2(공청회 및 토론회)
-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54조 및 59조(공청회)

2. 목 적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(신설 2023. 3. 21., 시행 2023. 9. 22.)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2023년 8월 현재 2건의 제정 조례안과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, 인사청문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함.

3. 안건명

- ‘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’ 제정 관련 공청회

4. 일 시

- 2023. 8. 25.(금) 10:30

5. 장 소

-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장(본관 3층)

6. 진술주제

- 인사청문회 구성·절차 및 운영에 관한 의견
- 인사청문 대상(범위)에 관한 의견
-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

7. 관련 조례안

- 「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」 (23. 4. 10.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)
- 「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」 (23. 6. 5.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)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(23. 5. 30. 김기덕 의원 대표발의)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(23. 5. 30.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)

8. 진행방법

-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로 진행
- 진술인의 주제발표 일괄 청취 후 질의·답변 실시
 - 진술인 주제발표시간: 7분 이내
 - 위원 질의시간: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
- 질의는 위원회 위원들만 가능하도록 함

9. 진술인(3명)

- 관련 전문가

연번	성명	소속 및 직위	비고
1	김중권	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	
2	전진영	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장	
3	유태동	법제처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	

10. 소요예산

- 「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 계획(의장방침 제1호, '23. 1. 3)」에 의거 지원예산 범위 내 집행

11. 기타사항

가. 진술인

- 진술인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3명으로 함
- 진술인은 발표문을 가급적 공청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
- 진술인에게는 의회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소정의 사례금 지급

나. 보도 및 촬영

- 언론의 취재는 허용하되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공청회는 의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함

다. 자료배포

- 진술요지서 등 공청회 자료는 가급적 1일 전에 배포함

라. 방 청

-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

마. 공청회 개최 공고문은 개최 5일 전 의회 전자게시판에 게시함

바. 공청회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